

2024. 10.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발의 의원 : 최승선 의원 )

의 안 번 호	2024-97
------------	---------

제출연월일 : 2024. 10. .

발의 의원 : 최승선 의원

## 1. 제정이유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기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안 제7조 ~ 안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4. 불임자료**

- 가. 조례제정안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관련 법령 발췌서
- 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 마. 타 시·도 유사 조례 현황
- 바. 타 시·군 조례
- 사. 입법예고 결과
- 아.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자. 성별영향평가 결과

## 김제시 조례 제 호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자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특전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김제시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장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제7조(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와 시 외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를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홍보·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특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장 보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 조례안 관련 내용**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6조(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 안 제7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 안 제9조(사무의 위탁)
- 안 제10조(포상)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비용 발생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 **4. 작성자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박종국 팀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 □ 관련 법령 발췌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 □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라북도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24.07.12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도 중 강원도 양양군 동일 조례 있음.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2021.07.19

## □ 타 시도 유사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제정일
	여	부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19.02.01 23.12.08 23.08.11
전주시	○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23.12.20
군산시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23.12.15
익산시	○		「익산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 조례」	24.02.07
정읍시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14.12.19 23.05.10
남원시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17.10.13 23.05.04
완주군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23.05.23
진안군	○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17.06.30 23.03.01
무주군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1.07.12
장수군	○		「장수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09.17
임실군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3.04.10
순창군	○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09.07.31
고창군	○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09.07.31
부안군	○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17.11.13 23.07.03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23.08.10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3.05.10

## □ 타 시 · 군 조례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정) 2023.12.26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24.07.12 조례 제204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남원누리시민제도”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 나.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4. “남원누리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 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 나.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 “남원누리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

를 말한다.

6. “남원누리시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원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7.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9.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장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제5조(자격) 남원누리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

- 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개정 2024.7.1>

2.>

제6조(등록)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누리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7조(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 <개정 2024.7.12.>

② 약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남원누리시민증 발급
2. 남원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원누리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남원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7.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남원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생활인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정) 2024.07.19 조례 제298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양양군은 관광·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양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양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 나.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를 수여 받은 사람

3. “양양사랑군민제도”란 양양군에 연고가 있거나 양양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양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사회적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웹을 통해 발급받는 양양군의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

5. “양양사랑군민가맹점”이란 양양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양양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제8조(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를 위해 양양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이라 한다) 홍보·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양양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양양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양양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보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2980호, 202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 명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9. 30. ~ 2024. 10. 7.(7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락운**

정책지원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허경구**

전기 2024. 10. 7.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4654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 □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 김제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관련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최승선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4. 9. 30. ~ 2024. 10. 7.(5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4553호(2024.9.30.시행)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운

정책지원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전경 2024. 10. 7.  
이정구

협조자

시행 : 의회사무국-4661

첨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sa.com / 대국민 공개

금빛 희망! 꿈을 수학하는 김제

##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지정선플 품: 세계를 날다. 제26회 김제지평선 축제 10. 2.(수) ~ 10. 6.(일)



### 김 제 시



수신 김제시의회 의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전폭김제078)-「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1. 의회사무국-4558(2024.9.30.)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 의견 통보서 (2024A전폭김제078) 1부. 끝.



주무관

김재은

기획정보팀장

기록책지과 과장 2024. 10. 3.

협조자

서호민

시행 기록책지과-26571

(2024. 10. 3.)

접수: 김제시의회

(2024. 10. 4.)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풍랑로 40. (서원동, 김제시청) (서원署) / <http://www.gijang.go.kr>

전화번호 033-540-0305

팩스번호 033-540-0329

/ <http://koicis44@korea.kr>

/ 대국민 공개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뛰는 도전!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전북김제078							
정책명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장라윤	전화번호	063-540-3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9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b>I. 개요</b>							
	<input type="checkbox"/> 개정 목적							
	<input type="radio"/>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라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기반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input type="radi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input type="radio"/>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input type="radio"/>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input type="radio"/>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input type="radio"/>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안 제7조 ~ 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가족복지과)	<input type="radio"/>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input type="radio"/>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b>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b>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b>김제시경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은/063-540-6905)								
의회사무국장 귀하								